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출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3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다. 합의 : 의견없음
- 라. 기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별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경비
2.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시민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

원은 청소과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2. 12

시민보사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1월 26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30회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제1

차 시민보사위원회('94. 12. 12)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가능품 분리수거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조례 제255호)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재산세세액 또는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던 폐기물 수수료는 폐지되고 봉투판매 가격에 의한 수수료를 정수토록 함.(안 제11조)

○ 쓰레기를 배출할 때 구청에서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서 구입, 쓰레기를 담아 배출토록 함(안 제1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95년 1월 1일부터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28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에 대한 문제점.

주민이 이사등의 사유로 남은 봉투의 현금으로 교환에 따른 불편함.

① 주민이 쓰레기 봉투를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에게 확인 받은 후 동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음.

② 주민은 봉투판매소에 가서 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봉투수량을 확인받은 후 현금교환

이와 같이 2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주민은 동사무소와 봉투교환소에 들고 다녀야하는 불편이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봉투수량을 세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함.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현행 2단계를 1단계로 줄여서 주민이 동사무소 확인을 받지 않고 바로 구매한 업소에서 구매자와 봉투 판매인과 직접 교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한 제도라고 사료됨.

그러나 우리구에서만 1단계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본 위원이 제시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향후 연구검토할 과제로 참고하시고 적정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며,

둘째, 규격봉투에 대한 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을 입안하여 입법예고시 봉투가격은 가정용이 240원, 사업장용이 260원으로 하였으나, 영등포 청소대행업체인 경청산업(국)의 7개 업체가 구청장이 정한 금액으로는 경영수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정용 320원, 사업장용 340원으로 인상조정을 요구해와 구청장이 검토과정에서 서울시 평균가격이 가정용 260원, 사업장 270원을 참작하여 가정봉투를 240원에서 250원으로 10원 인상 조정하였고, 사업용 봉투는 260원에서 270원으로 10원 인상 조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2개 구청의 규격봉투가격(안)에 대하여 조사한 바, 가정용 봉투가격은 관악구가 210원으로 최저이고 강남구가 300원으로 최고임.

22개 구청의 평균치가 261원 90전임.

사업장용봉투가격은 관악구가 230원으로 최저이고, 최고가 강남구 300원임.

22개 구청의 평균치는 276원 60전으로 분석되었음.

봉투가격이 적정한 가격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279 |
|----------|-----|

제출년월일 : 1994. 1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가능품 분리수거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조례 제255호)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재산세액 또는 영업장면적을 기준으로 하던 폐기물수수료는 폐지되고 봉투판매 가격에 의한 수수료를 정수토록 함.(안 제11조)
- 쓰레기를 배출할 때 구청에서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서 구입, 쓰레기를 담아 배출토록 함(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63조.
- 동법시행령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4조
- 나. 예산조치 :
- 다. 합의 : 의견없음
- 라. 기타 : 개정조례안(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정폐기물 :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3. 다량폐기물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또는 1회에 1톤이상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4. 다량배출일반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축물폐재류 :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

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6. 대형생활폐기물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개별 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

7. 재활용가능품 :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

제4장을 삭제하고 제5장을 제4장으로 하되 각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1조(종량제실시)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안에서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가격에 의한다.

제12조(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종량제 폐기물은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다량배출일반폐기물, 건축물폐재류등은 제외한다.

제1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가정용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가정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주황)색, 공공용 봉투는 짙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4와 같다.
4. 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그 밀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동사무소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공공용봉투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④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도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신고
5.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7. 기타 행정지시사항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의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20조 제1항의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제23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 ①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수집·운반수 수료는 별표6과 같다.

3.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

4.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처리비는 별표8과 같다.

②제1항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①일반폐기물 수수료 등은 당해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건축물폐재류에 대한 처리비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5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등)** ①제2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매월징수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26조(가산금등)**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7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28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봉투판매인은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26조** 내지 **제32조**를 각각 **제29조** 내지 **제35조**로 하고 **제29조(종전의 제26조)**의 제목 “과태료처분통지등”을 “과태료부과 및 처분통지등”으로 하며 **제29조 제1항(종전의 제26조 제1항)**중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로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를 “법 제7조의 규정”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제2항(종전의 제27조제2항)**중 “제26조제1항의 규정”를 “제29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삭제하고 〈별표1〉 내지 〈별표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 제1조 : 생략<br>제2조(용어의 정의) | <p>제1조 : 생략(현행과 동일)</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정폐기물 :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li> <li>2. 사업장폐기물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li> <li>3. 다량폐기물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또는 1회에 1톤이상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li> <li>4. 다량배출일반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1일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li> <li>5. 건축물폐재류 :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li> <li>6. 대형생활폐기물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li> <li>7. 재활용가능품 :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li> </ol> <p>제3조~제4조 : 생략</p> <p>제2장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p> <p>제5조~제8조 : 생략</p> <p>제3장 일반폐기물의 처리업의 지도감독</p> <p>제9조~제10조 : 생략</p> <p>제4장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p> <p>제5장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종량제 실시</p> <p>제11조(종량제실시)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br/>②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p> |

| 현 행               | 개 정 안   |
|-------------------|---|
|                   | <p>다)의 수수료는 별표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가격에 의한다.</p> <p>제2항 삭제</p> <p>제12조(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다량배출일반폐기물, 건축물폐재류등은 제외한다.</p> <p>제1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p> <p>②종량제 실시 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p>  |
|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등)   | <p>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①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p> <p>②가정용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 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p> <p>제15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격봉투의 색깔은 가정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주황)색, 공공용봉투는 짙은 청색으로 한다.</li> <li>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3과 같다.</li> <li>3.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4와 같다.</li> <li>4. 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그 밀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li> </ol> |
|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판매) | 제16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
| 제19조(규격봉투의 관리)    |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차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때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8조에서 별도규정)</p> <p>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5조 제1호내지 제4호</p>   |

| 현 행             | 개 정 안   |
|-----------------|---|
|                 | <p>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p> <p>②공공용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p> <p>③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p> |
| 제20조(규격봉투의 기준)  | <삭제>  |
| 제21조(판매소의 지정)   | <p>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p>  |
| 제22조(판매인의 준수사항) | <p>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li> <li>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li> <li>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li> <li>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신고</li> <li>5.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li> <li>6. 규격봉투의 현금교환</li> <li>7. 기타 행정지시사항</li> </ol>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3조(판매소의 지정해제)     | <p>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20조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자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p> <p>제22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의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p>  |
| 제4장 일반폐기물의 수수료부과 징수 | 제5장 종량제 제외대상 알비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
| 제11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  | <p>제23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 ①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li> <li>2.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li> <li>3.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li> <li>4.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처리비는 별표8과 같다.</li> </ol> <p>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①일반폐기물 수수료 등은 당해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p> <p>②건축물폐재류에 대한 처리비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p> <p>제25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등) ①제23조 제2호 및</p> |
| 신 설                 |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매 월정수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p> <p>②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 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p> <p>제26조(가산금등)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p> <p>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와 대형생활 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정수한다.</p> <p>제27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li> <li>2.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li> <li>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지급한다.</p> |
| 신 설            | <p>제28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p> <p>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④봉투판매인은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p>   |
|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
| 제26조(과태료부과등)   | 제29조(과태료부과 및 처분통지등)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제1  |

| 현 행   | 개 정 안  |
|---|--|
|   | <p>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p> <p>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
| 제27조(청문)                                    | <p>제30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p>  |
| 제28조~제30조 : 생략<br>제7장 보 칙<br>제31조~제32조 : 생략 | <p>제28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제31조 내지 제33조로 한다.<br/>제7장 보 칙<br/>제31조 내지 제32조를 각각 제34조 내지 제35조로 한다.</p>   |
| 부 칙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1〉 내지 〈별표8〉로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

별표1

##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 종 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
|-----------|--|--|
| 1. 종이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지</li> <li>-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li> <li>- 종이컵, 팩</li> <li>-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게 함</li> <li>- 반듯하게 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li> <li>-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함.</li> <li>-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li> <li>- 비닐포장지는 제외</li>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li> <li>- 비닐코팅 부분 제거</li> <li>-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li> </ul> |
| 2. 캔 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캔, 알루미늄캔(음·식 용류)</li> <li>-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가능하면 압착</li> <li>-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li> <li>-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li> <li>-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li> </ul>   |
| 3. 병 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료수병, 기타병</li> <li>- 농약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li> <li>-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br/>※맥주, 소주병은 수퍼에 팔수 있음</li> <li>-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배출</li> </ul>  |
| 4. 고철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 판등 쇠붙이)</li> <li>-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li> <li>- 위와 같음</li> </ul>  |
| 5. 플라스틱 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T병</li> <li>- 합성수지용기류</li> <li>-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li> <li>※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li> <li>-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br/>※폐유 용기류는 제외</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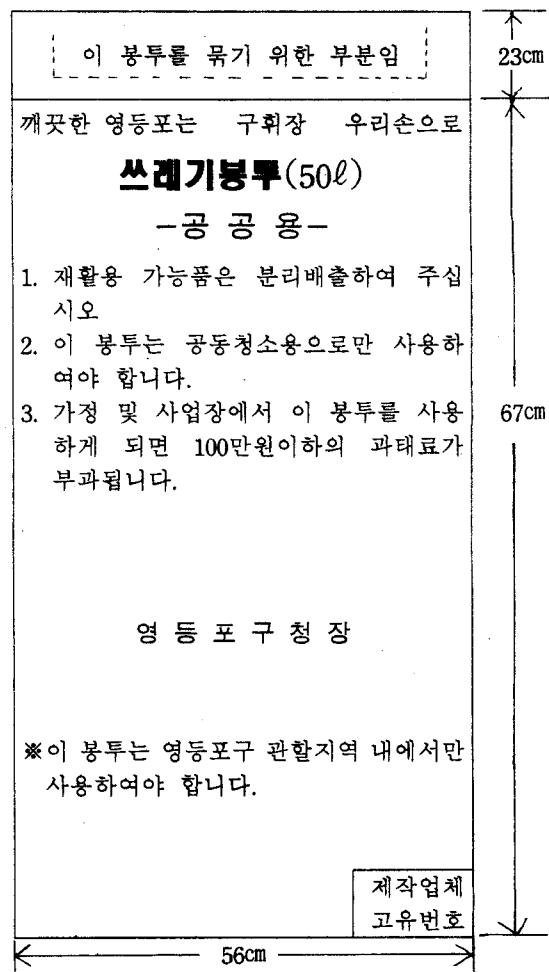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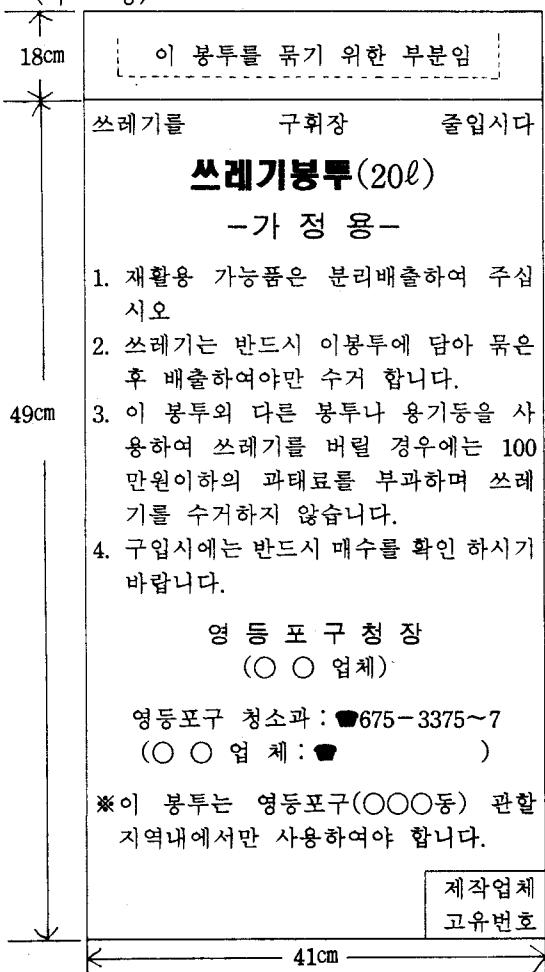
별표2 규격 봉투 가격  
(단위: 원)

| 구 분  | 가 정 용 | 사 업 장 용 |
|------|-------|---------|
| 5ℓ   | 70    | -       |
| 10ℓ  | 130   | -       |
| 20ℓ  | 250   | 270     |
| 50ℓ  | 620   | 670     |
| 75ℓ  | -     | 1,000   |
| 100ℓ | -     | 1,330   |

별표3 봉투용량별 규격 및 용도

| 용 량  | 규격(가로×세로cm) | 두께(mm) | 용 도            |
|------|-------------|--------|----------------|
| 5ℓ   | 26×31       | 0.020  | 가정용            |
| 10ℓ  | 33×40       | 0.020  | 가정용            |
| 20ℓ  | 41×49       | 0.025  | 가정용, 사업장용      |
| 50ℓ  | 56×67       | 0.030  |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
| 75ℓ  | 64×77       | 0.035  | 사업장용, 공공용      |
| 100ℓ | 71×85       | 0.040  | 사업장용, 공공용      |

별표4  
<사 양>



- 사업장용 봉투는 “가정용” 대신 “사업장용”으로 표시
- 직영지역은 해당구청 표시만하고 대행지역은 구청과 업체명 동시표시
- ※의 ○○동은 대행업체별 수거지역 표시
- 여분의 길이 =  $\frac{\text{가로길이}}{\pi} + 5\text{cm}$
- 묶는 부분에 표시한 점선은 제2모델로서 잘라내는 부분임.

별표5

## 규격봉투 판매소 표지판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 쓰 레 기 봉 투

-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6

##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 수집·운반 수수료

| 종별                         |       | 부과 기준      | 비 고                                 |
|----------------------------|-------|------------|-------------------------------------|
| 다<br>량<br>폐<br>기<br>물      | 일반다량  | m'당 5,100  | ○ 쌍방합의하에 요율의 10% 범위안에서 가산 징수할 수 있다  |
|                            | 오니케익등 | 톤당 6,800   |                                     |
| 건<br>축<br>물<br>폐<br>재<br>류 |       | m'당 10,000 | ○ 쌍방 합의하에 요율의 20% 범위안에서 가산 징수할 수 있다 |

- 비고 : 1. 오니케익 등이라 함은 하나의 배출처에서 단일성상으로 다량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발생단계부터 무게의 비중치가 높아 부피로 환산함이 부적당하다고 일반쓰레기와 완전구분되어 독립된 수집·운반·처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폐기물  
 2.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별표7

##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 품 목 별       | 규 격                    | 부 과 금 액<br>(단위: 원) | 비 고 |
|-------------|------------------------|--------------------|-----|
| 냉 장 고       | 500ℓ 이상                | 8,000              |     |
|             | 300ℓ 이상                | 6,000              |     |
|             | 300ℓ 미만                | 4,000              |     |
| 텔 라 비 전     | 42인치 이상                | 5,000              |     |
|             | 12인치 이상                | 3,000              |     |
| 세 탁 기       |                        | 3,000              |     |
| 에 어 콘       | 264m <sup>3</sup> 형 이상 | 8,000              |     |
|             | 66m <sup>3</sup> 이상    | 5,000              |     |
|             | 66m <sup>3</sup> 미만    | 3,000              |     |
| 가 스 오 븐 렌 지 | 높이 1m 이상               | 4,000              |     |
|             | 높이 1m 미만               | 2,000              |     |
| 탈 수 기       |                        | 2,000              |     |
| 공 기 청 정 기   | 높이 1m 이상               | 2,000              |     |
| 장 농         | 120cm 1쪽               | 15,000             |     |
|             | 90cm 1쪽                | 10,000             |     |
| 서 랍 장       | 5단 이상                  | 4,000              |     |
|             | 4단 이하                  | 2,000              |     |
| 신 발 장       |                        | 2,000              |     |
| 문 갑         |                        | 3,000              |     |
| 화 장 대       |                        | 3,000              |     |
| 장 식 장       |                        | 4,000              |     |
| 용 접 세 트     | 장의자                    | 5,000              |     |
|             | 의자                     | 2,000              |     |

(주)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8

## 일반폐기물 처리비 종별 부과기준

| 종 별         | 부 과 기 준 | 월 부 과 금 액<br>(단위: 원)   | 비 고 |
|-------------|---------|------------------------|-----|
| 가 정 폐 기 물   |         |                        |     |
| 사 업 장 폐 기 물 |         |                        |     |
| 다 량 폐 기 물   | 압 축     | m <sup>3</sup> 당 6,190 |     |
|             | 미 압 축   | m <sup>3</sup> 당 2,170 |     |
|             | 농 수 산   | m <sup>3</sup> 당 3,500 |     |
|             | 음 식     | m <sup>3</sup> 당 5,220 |     |
| 건 축 물 폐 재 류 | 톤 당     | 8,000                  |     |

- 비고 : 1.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고시하는 반입료가 변동될 경우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함.  
 2. 다량폐기물중 농수산폐기물이라 함은 농수산물의 보관·운반 및 판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배출처에서 다른 일반폐기물과 완전구분되어 독립된 수집·운반 체계를 갖추고 있는 폐기물  
 3. 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하는 다량 배출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계량한 중량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한 반입료를 부담하여야 함.